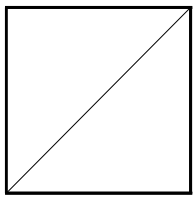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96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4. 8. (제 7 차)

의결사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8.

1. 의결주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제27조제1항제3호)

-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으로 확대

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제28조제3항)

-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있어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추가·변경
-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권 및 안건상정권 규정(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여 수사의 적시성 확보
-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의결 원칙 명시(제28조제7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

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제공 삭제(제27조제3항 삭제)

-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사와 수사부서간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삭제

바.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규정(제28조제8항 신설)

- 수사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이 불가피할 경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6. ~ 2026.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 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최일 당일에 제6항에 따른 의결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7항으로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⑤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사 개시) ① (생 략)	제27조(수사 개시)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로부터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삭 제 >
제28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28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다만,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한	4.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정한다.	----------.
5. 심의할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자	< 삭 제 >
<신 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 설>	⑤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개최일 당일에 제6항에 따른 의결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 설>	⑧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5605